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45
----------	-------

발의연월일 : 2025. 9. 12.

발 의 자 : 이정문 · 박 정 · 이개호
김 윤 · 이인영 · 이연희
한민수 · 안태준 · 채현일
이재관 · 문진석 · 이학영
조승래 · 박수현 · 복기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됨.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중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효력이 없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

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당사자인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사건의 다른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해당 조정대상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0조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조정외 효력) (생략)	제39조(조정외 효력)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 에 따른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당사자인 일반금융소비자가 조 정안을 수락하면 해당 사건의 다른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 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해당 조정대상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 ② (생략)	제40조(시효의 중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③ ----- ----- ----- -----.
1.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 한 경우 <단서 신설>	1. ----- ----- 다만, 제3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반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 한 경우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